

지구적 정의론으로서 지구시민권구상의 윤리학적 기초에 대한 연구

- Rawls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와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심 상 용

(상지대학교)

[요 약]

이 연구는 유력한 지구시민권구상인 Rawls의 자유주의적 접근과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구상에 대해 지구적 정의론으로서의 윤리학적 기초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무론측면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경도된 Rawls의 견해는 국제관계의 불평등이 구조화된 경제의 세계화시대의 호혜성의 의무와 시민적 권리에 관한 의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는 지구적 차원의 반지배원칙의 구현을 주창해 의무론적 정당화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공리주의 면에서 Rawls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입각해 개별국가들 간의 재분배를 거부하는 논리에 대해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는 개도국시민들의 구조적 희생을 극복해 지구적 차원의 해악을 줄이고 효용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주제어: 지구적 정의, 지구시민권,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 규범윤리학, 응용 윤리학

1. 서론

서구사회는 1648년 확립된 웨스트팔리안체제(westphalian system) 이후 배타적 주권을 소유하게 된 국가를 중심으로 근대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수립하고 국가구성원에게 포괄적 시민권(full citizenship)을 보장했다. 서구 중심의 문명화를 지향해 온 많은 사람들은 국민국가와 일국적 시민권의

일대일의 배타적 대응관계를 문명화의 종착지처럼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함께 1997년 12월 13일 한국의 새 대통령이 IMF가 국제금융의 조건으로 제시한 구조조정프로그램 이행각서에 서명하자, 배타적인 성역으로 간주돼 온 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세계화추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규제된 세계화(regulating globalization)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McGrew, 2002).

이처럼 최근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웨스트팔리안체제의 토대가 침식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등장하고 있다. 강대국과 자본은 국제무대에서의 개도국에 대한 개입행위에 대해 자국민들로부터 아무런 위임도 받지 않아 대표성과 책임성을 갖지 않은 채 개도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반면, 개도국의 시민들은 이들 외부자들의 개입에 의해 주권의 행사가 제약되는 비대칭적(asymmetry)인 이상(異狀)현상이 발생해 민주주의의 결손(deficit)이 표면화되고 있다(Anker, 2002: 163; Dower and Williams, 2002: 6).

이에 따라 새 밀레니엄(millennium)을 전후해 '일국적 민주주의의 외부'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 일고 있다. 3백여 년 간 존속돼 온 일국적 정치체제가 경제의 세계화 현상 앞에 일부 무력화 되는 현상으로 인해, 배타적 주권의 절대적 존재가치와 국민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소속을 전제로 보장되는 일국적 시민권이 더 이상 성역이 아니라는 의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의 세계화시대의 최대 화두 중의 하나는 지구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외부'를 내부화시키고 지구시민들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지구시민권의 성립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이다.

그러나 지구시민권의 성립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들이 여전히 지배적인 게 현실이다(Carter, 2001: 167-174). 생래적(生來的)이고 전정치적(pre-political)인 인권관에 기초해 있는 칸트주의자(Kantian)들(Nussbaum, 2002 등)은 보편적 인류애로서 세계시민주의(world citizenship)를 주장하지만 개인의 도덕성에 호소하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 문화적 맥락이 개인적 가치와 행동을 형성한다는 연고적(緣故的) 자아관을 주장하는 공동체주의자들(Walzer, 1983; Sandel, 1996: 342)은 두터운(thick) 시민권은 특수한 문화에 의해 구성된 가치와 믿음을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보아 지구시민권의 성립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고, 단지 얇은(thin) 차원의 개인적인 보편적 도덕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는 달리 지구적인 제도적 질서와 권리·의무관계에 기초한 지구시민권구상을 정식화하려는 유력한 구상들도 제출되고 있다. 자신의 자유주의적 정의관(Rawls, 1971)이 일국적 차원에 국한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Rawls는 국제원조를 중심으로 지구적 정의에 대한 구상을 제출하고 있다(Rawls, 1999). 그러나 이 구상은 국가주의에 바탕을 둔 비자유주의적 접근으로 지구시민권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Beitz, 2000). 한편 귀속적인 공동성과 소속을 강조하는 시민적 공화주의와 달리, 고전적 공화주의자들은 최근 비지배(non-domination) 자유관을 지구차원에서도 적용한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 공화주의의 지구시민권구상을 제출해, 공화국들의 공화국으로서의 지구적 정치체제를 수립하고 일국적 지구적 차원에서 다층적 시민권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Bohman, 2004). 이 구상은 경제의 세계화 시대에 지구시민권개념을 구성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 보편적인 합의를 얻고 있는 건 아니다(김경희·김동규 역, 2006; 곽준혁, 2009).

이렇듯 지구시민권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정치적 구상차원을 넘어 지구적 정의론으로서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구시민권구상에 대한 윤리학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Dower, 2002: 149). 응용윤리학의 과업은 사회현상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데 있어 이성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일이다. 지금 초보적인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지구시민권구상이 지구적 정의론으로서 보편적인 기초를 갖추고 있는지 윤리학적 검토에 착수하는 작업이 요청되고 있는 이유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제출돼 있는 유력한 지구시민권구상인 Rawls의 자유주의적 접근과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구상에 대해 지구적 정의론으로서의 윤리학적 기초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규범윤리학의 두 축인 의무론과 목적론을 적용해 지구시민권구상의 윤리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윤리학의 두 가지 주요 개념은 올바른[의무]과 선(좋은)[욕구]인데, 이 각각의 개념에 기초해 있는 의무론과 목적론은 올바른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대부분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과거에도 물론이고 현재에도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Davis, 1993; Arrington, 1998).

세계시민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지구시민권개념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Rawls의 자유주의적 접근과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에 대해 본격적인 윤리학적 검토에 착수한다는 점에서, 지구시민권구상과 윤리학의 접목을 시도하는 이 연구는 사회과학계 전반뿐 아니라 향후 사회복지계가 지구시민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이론적 모색에 착수할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윤리학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Marshall(1963: 46-47)이 1949년에 제시한 시민권론은 사회복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박순우, 2004). 국가를 시민권의 공급자이자 보증자로 간주하는 Marshall의 논지에 따라, 사회복지계는 철저한 일국적 관점 아래 서구 근대국가를 정체성의 초점으로 삼아 시민권구상을 정립했다(심상용, 2011).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돼 일국적 시민권의 한계가 노정된 상황이지만 사회복지계는 여전히 일국적 시야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지구시민권이라는 새로운 의제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본격적인 접근의 출발이라는 의의가 있다.

사회과학에서의 개념과 이론이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다면, 본 연구의 고찰은 세계화 시대에 시민권론을 개념적으로 재정립하는데 필요한 초보적인 논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최근 지구시민권개념의 미성숙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커지고 지적 상상력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관련 연구를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지하다시피 지구시민권구상에 관심을 갖는 국내외의 연구들은 예외 없이 이에 대한 윤리학적 논의를 다루지 않아왔다¹⁾. 응용윤리학 차원에서도, 지구적 정의에 대한 논의는 해외원조의 정당성과 수준에 대한 윤리학적 검토²⁾에 머물고 있었을 뿐이어서, 사회과학계가 민주주의의 결손에 따른 이상

- 1) 해외원조차원을 넘어 지구시민권을 명시적으로 주창하는 논자들이 제기하는 윤리학적 논의로는 Dower와 Williams가 편집한 책(2002)에 수록된 Dower(2002), van den Anker(2002)의 글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두 글은 지구시민권에 대한 윤리학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는데 그치고 있다.
- 2) Kant시대 아래 윤리학은 해외원조에 관심을 가져왔다. 경제의 세계화 이후 지구적인 차원의 정의에 대해 학문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해외원조를 둘러싼 응용윤리학적 논의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해외연구로는 Dower(1993), Pogge(2001), Singer(2002) 등이 있다. 국내연구로는 손철성(2008), 김지현·손철성(2009), 김준석(2010)을 들 수 있다.

(異狀)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경제의 세계화시대의 지구시민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지적 자원은 사실상 부재하다.

자선의 원리에서 발전한 해외원조에 대한 윤리학적 논의는 근원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의무론적 맥락에서 보살핌의 의무는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Kant는 자선의 의무의 한계를 직시해 재능개발의 의무와 함께 예외가 허용되는 불완전한 의무로 보았다. 자선의 동기는 동정심이나 자기에 같은 베푸는 자의 욕구에 의지한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근본적으로 인간을 목적 자체로서 처우하는 자율적 관점에 근거해 있지 않다면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 대하는 가언명법에 의거한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다(Arrington, 1998). 이렇듯 의무론적 맥락에서 자선의 의무는 그 동기가 불평등한 시혜적 관점에 입각한 것으로 인격적 혹은 비인격적 주종관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기아, 빈곤, 질병 같은 문제를 개인 차원의 재난으로 보아 구조적인 문제의 희생양으로 인식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자선에 대해 개인들의 반응에 국한돼 실효성이 제한돼 있다고 보고, 보살핌의 의무를 중심으로 해외원조의 정당성을 논증하려 한다. 보살핌의 의무의 논거로는 부국들의 자원이 많다는 점, 부국내의 소외층보다 빈곤국의 문제가 훨씬 심하기 때문이 이를 더 고려해야 한다는 점, 빈곤으로 인해 수명단축·질병·기아 등의 극심한 고통, 인간의 존엄과 품위 훼손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점을 중시한다(Dower, 1993). 그러나 이 관점 역시 자선의 의무가 갖는 근원적인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둘째,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도 자선과 해외원조는 효용성에 있어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Mill은 효용성에 기초한 완전한 의무인 정의와는 달리 자선이나 자비는 불완전한 의무로 선택의 문제라고 간주했다(Arrington, 1998). 권리가 효용성에 기초한 완전한 의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선이나 자비는 각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고 모든 개인이나 모든 자선단체에 대해 그렇게 해야 할 의무를 지니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체계적인 해외원조가 개별적인 자선보다 비용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어느 수준까지 보살펴야 하는가 또 어디부터 보살펴야 하는가 하는 실질적인 논쟁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이 때문이다(Dower, 1993).

2. 지구시민권구상의 전개

1) Rawls의 지구시민권구상

Rawls는 인간의 자율성에 절대적 의무를 부여하는 Kant의 인간관을 바탕으로 사회계약에 참여하는 합리적 개인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절차적 정의를 제시하고자 했다(Rawls, 1993). 그의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관은 원초적 위치(original position)와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을 핵심적인 개념으로 제시한다. 분배의 원리를 정하는데 참여하는 개인들이 자신의 재능과 소질 그리고 선관념(conception of the good)에 대해 모르는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모든 시민

들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동등한 기본적 자유의 권리를 지닌다는 평등의 원칙(principle of equality)을 정의의 제1원칙으로 삼는데 합의할 수 있다. 원초적 위치에서는 출생배경, 사회적 경제적 환경으로 인한 이득,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 등 우연적 요인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직책과 지위를 개방하는 공정한 기회의 균등의 조건을 필요로 한다.

이어 서열적 혹은 축차적 순서(serial or lexical order)상의 제2원칙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조건아래 특히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때 합의할 수 있는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을 제시한다. 원초적인 위치에 있어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가장 취약한 계층(the least advantaged)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최소최대화전략(maximin strategy)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Rawls, 1971).

Rawls는 후에 정의의 제1원칙과 제2원칙이 통용되는 사회를 합당한 자유만민(reasonable liberal peoples)의 사회라 칭했다(Rawls, 1999). 이 사회는 시민들이 자신을 이상적인 행정가나 입법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들의 공적 이성을 위반하는 국내 및 국제정책을 펼치는 정부 공직자와 후보자들을 거부하는 기풍이 확립돼, 시민들의 자유와 시민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기초가 마련된다고 본다. 시민권의 세부목표는 공정한 기회의 평등, 소득과 부의 적절한 분배, 사회·경제정책을 통한 최후의 고용자로서의 사회(국가),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건강보호제도의 제공, 선거에 대한 공적 자금 및 정책 관련 정보의 제공 등으로 구성된다.

자신의 정의론이 일국적 한계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³⁾이 제기되자 Rawls는 지구적 차원에서 정의론을 전개해 자신의 논리를 확장했다(Rawls, 1999). 그는 국제법과 국제관행의 원칙에 적용되는 정의에 대한 정치관을 전개하려 했다. 그러나 현실주의적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그의 지구적 정의관은 국내정치체제에 적용되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만민의 사회로 확대하는 관점을 취한다. 시민과 만민(peoples)을 구분해, 국내사회에서는 개체화된 개인으로서의 시민관을 적용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자신들의 정부를 통해 행위 하는 집합적 개념인 만민관을 제기한 것이다. 이 만민은 입헌민주정부, 민족성의 정체성으로의 공통의 문화적 공감대, 정의에 대한 공통의 도덕적 본성을 구성요소로 한다.

이어 국내와 지구차원으로 구성되는 단계적인 계약의 원리를 제시한다. 1단계는 기존의 논법대로 닫힌 사회인 일국차원의 공간에서 개체화된 개인 간에 적용되는 정치적 정의관이다. 이 단계에서 선에 대한 포괄적 원리(comprehensive doctrine of the good)로서 일국적인 분배적 정의관이 결정된다. 2단계는 특정한 민주국가의 만민들을 대신하는 합리적 대표자들 간에 무지의 장막에 처한 원초적 입장에서 공정한 합의를 추구하는 국면이다. 합의 당사자들은 자기 나라의 영토의 크기, 인구규모, 상대적 힘의 크기, 자원과 경제발전의 수준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협상에 임한다.

만민들은 자신들의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시민적 자유, 안전과 복지 등을 보장받으려는 근본적인

3)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정의의 제1원칙은 지구차원에도 적용될 수 있고, 따라서 제2원칙인 차등의 원칙도 지구적으로 확장해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는 자원의 불균등한 분포 같은 우연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불공평이 발생한다(Beitz, 1979).이 때문에 그의 정의관이 정의의 원칙을 국내에만 적용해 일국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건 어색한 일이 아니다.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구적 차원에서는 만민들의 평등의 원칙이 제1원칙인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의 원칙으로 채택된다. 이 원칙은 만민들의 자유와 독립성 존중, 조약과 약속의 준수, 만민 간의 평등, 불간섭의 의무, 방어권리, 인권존중, 전쟁수행 시 제약사항의 준수 등으로 구성된다. 국제사회에서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선호되는데, 만민의 대표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평등과 독립성을 보존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공정한 무역을 보장하는 기구, 협력적인 은행제도, 유엔과 유사한 만민의 연합(confederation of peoples) 등 만민간의 기구와 느슨한 연합(loose confederations)까지가 허용될 수 있다. 제2원칙인 차등의 원칙은 적정수준의 정치 및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불리한 여건 때문에 고통 받는 사회⁴⁾의 다른 만민을 원조할 의무로 나타난다. 원조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시민적 권리와 자유, 기회활용의 욕구 등 기본적인 욕구(basic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권리, 경제적 수단의 보장을 지향한다.

그러나 지구차원의 정의의 원칙에서는 만민들의 사회 간의 부와 복지수준의 재분배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원조의 의무에는 재분배와 관련된 명확한 목표와 기준점(cut-off point)이 있는 것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들 고통 받는 사회의 고통의 원인은 정치적 문화적 전통 때문에 인적 자본, 기술수준, 물질적 자원과 과학기술의 기반 등이 결여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자원과 부가 결핍된 사회라 하더라도, 종교적 도덕적 신념과 문화를 지탱하는 정치적 전통, 법, 자원, 계급구조가 자유사회나 적정수준의 사회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 질서정연해 질 수 있다. 한마디로 이들 국가의 만민들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은 잘못된 정치문화에 있기 때문에, 원조는 이 국가가 정치적 사회적 문화를 바꾸어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목적 아래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따라서 지구차원의 차등의 원칙은 국내에서와는 달리 만민사회들 간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분배의 원칙을 지향하지 않는다.

이처럼 원조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통을 겪는 국가들에서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원조의 의무의 세부목표들은 분배 관련 자원을 지원하는데 국한해서는 안 되고, 국민들에 대한 복지에 무능한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바꾸어 사회적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강조를 포함해야 한다. 이들 국가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된 뒤에는 만민사회 간의 평균적인 부의 차이를 좁혀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상대적으로 빈곤하더라도 더 이상 원조를 할 필요가 없다.

Rawls는 지구차원의 자원재분배원칙이나 지구적 분배원칙을 주장하는 Beitz와 Pogges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반대한다. 구성원들 간에 특정한 정치문화와 정치적 시민적 덕목을 공유하는 닫힌 사회인 국내차원에서는 일국적인 분배적 정의관이 적용되지만, 지구차원에서는 그와 같은 공통성이 없기 때

4) Rawls는 만민들의 사회를 다섯 가지로 구분했다. 앞서 설명한 합당한 자유만민의 사회는 카자니스탄(Kazakhstan)이라 불리는 이상화 된 이슬람 만민들의 사회인 적정 수준의 만민(decent peoples)의 사회와 함께 공통적으로 적정 수준의 협의적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위계적 만민(decent hierarchical peoples)의 사회로 통칭되고, 이들 만민들은 질서정연한 만민(well-ordered peoples)으로 불린다. 다음으로는 무법국가들(outlaw states), 불리한 여건 때문에 고통 받는 사회(societies burdened by unfavorable conditions), 자애적 절대주의(benevolent absolutism)로 구분된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문에 개체화된 지구시민들 간의 불평등을 규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칸트주의자들의 세계시민주의 주장에 대해서도 개인차원의 복지이지 사회적 정의관은 아니라며 자신의 견해와 구분한다. 이를테면 세계시민주의는 정의의 원칙을 국내적으로 충족시킨 두 사회에서, 한 사회 내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 다른 사회 내의 가장 취약한 계층 보다 열악한 위치에 있다면 지구적으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자유주의적인 지구적 정의관은 질서정연한 사회들 간의 정의와 안정성에 최대의 공정성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지구시민들 간의 분배에는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코즈모폴리탄 공화주의의 지구시민권구상⁵⁾

고전적 공화주의는 주종적 지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비지배의 상태를 정치적 자유의 이상향으로 제시한다. 지배란 법의 제제를 두려워함이 없이 언제라도 남을 마음대로 억압할 수 있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들의 자의적 의지에 노출돼 있음을 의미한다(Pettit, 1998). 예속 혹은 주종적 지배는 사람들이 공포를 갖고 움츠러들도록 하는 개인의지의 조건화로, 구체적인 행동이 없더라도 시민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자유에 대한 공격이 된다(김경희·김동규 역, 2006).

비지배 자유는 개인 차원의 정치적 자유를 추구하는 형식적인 근대의 자유개념과는 달리 공화국 구성원간의 권리와 의무관계에 기초하는 시민적 권리를 내용으로 삼고 있다⁶⁾. 여기서 비지배 자유는 단지 시민적 정치적 권리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회적 시민권까지도 포함한다. 예속이나 주종적 관계로부터 실질적으로 탈피할 수 있게 되려면 모든 시민들이 존엄과 자존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들이 보장돼야 하는데, 일할 권리, 교육의 기회, 빈곤으로부터의 탈피, 기타 노령·질병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가 제도로 확립돼야 한다. 그런데 사회적 시민권보장의 의무는 사적 개인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구호나 자선은 도움을 받는 자로 하여금 돕는 자의 선의에 의존하도록 해 존엄성에 상처를 주고 정의로운 시민적 삶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코즈모폴리탄 공화주의는 최근 지구화가 진전돼 환경·경제 등의 지구적 문제들은 이미 일국 차원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지구사회는 운명공동체로서 정치공동체가 돼 있다는 상황인식에서 출발한다(곽준혁 외 역, 2009: 1-30; Chung, 2003). 그런데 국제체제는 강력한 국가와 다국적기업 같은 사적 행위자들에 의한 무수한 형태의 지배가 발생하는 장소이다(곽준혁 외 역, 2009: 269-302). 이를테면 다국적기업들은 지구적인 법적 규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강한 국가들의 욕구를 등에 업고 자의적으로 권력(dominium)을 행사하고 있다⁷⁾.

5) 이 장의 내용은 심상용(2012)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

6) 한편 시민권이란 정치세계에 적용된 시민적 덕성에 다름 아니라고 보아, 시민권을 실제적 권리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비지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공공선(common good)에 봉사하겠다는 각오와 능력 즉 시민적 덕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자유에 대한 수호로서의 시민적 덕성과 공화주의적 애국은 같은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애국은 정치와 공적인 삶에 대한 참여를 통해 키워지는 인위적인 감정이고, 조국이라는 존재의 기반은 시민들과 그 국가의 관계, 자유국가로서의 공화적 제도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방식이다.

대표적으로 국제재정기구활동 등 민족국가의 탈영토화 탈민족국가화 된 초국적 활동은 해당국가의 시민들로부터 위임의 경계가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은 민주주의의 외부로 존재해 주인-대리인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속된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 다른 민족국가와 그 시민들에 대해 자의적 지배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민족국가의 초국적 활동은 소속 시민들에게 아무런 책임성도 갖지 않는 비대칭적이고 불안정한 권위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오히려 국가가 국제재정시장에 대해 책임성을 갖는 관계로 둔갑되고 있다⁸⁾.

국제재정기구들의 개입은 자의적 지배로 표면화되는데, 영향을 받는 국가의 시민들에게 그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정당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자의적인 지배에 비자발적으로 종속돼 있어 국가의 권위가 훼손돼 있는 이들 민족국가의 시민들은, 소속된 국가를 상대로 비지배 자유의 획득을 위해 투쟁해도 지배의 위협을 제거할 수 없다. 자신들의 국가가 외부로부터 지배받고 있으면 시민들은 원천적으로 자유를 향유할 수 없는 것이다(Pettit, 2010). 이는 외부로부터의 지배에 의해 민족국가의 권위가 무력화 돼 해당 정치공동체가 파괴되는 현상으로, 지구화는 근대적 폭정(modern tyranny)과 유사한 결과를 낳고 있어 민주주의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국적 경계내의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민족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지구적 지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구적인 정치공동체를 실체화해야 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외부의 존재와 그로인한 민주주의의 결손을 방지하고 지구적 차원에서 새로운 형태의 소속과 시민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민주적 책임성을 제도화해 비지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화주의적인 지구적 정체(政體)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공화국들의 공화국으로서의 코즈모폴리턴 민주주의의 공화주의정체(政體)에서는 법률에 의한 반지배원칙의 구현이 대안적 구상으로 채택돼야 한다.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공화국들이 다른 공화국이나 기술적으로 덜 발전된 공동체에 대해 지배권(imperium)을 확립하려는 성향을 견제하는데 필요하다(곽준혁 외 역, 2009: 269-302). 둘째, 궁극적으로는 민족국가, 다국적기업, 국제재정기구 등 지구사회에서의 지배적 행위자들에게 정치적 책임성(accountability)을 부여해, 이들의 자의적 지배를 통제하고 지구시민들의 시민권으로서의 정치적 자기결정권을 확립하게 해 주는 민주주의적 제도의 일부이다. 시민으로서의 소속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자기결정권으로서의 자유를 권리로 확립하는데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Pettit, 1998). 셋째, 정치공동체에 소속되면 시민들은 지배의 권위에 대항하기 위해 적절한 대의적(representative) 장치를 통해 공적 공간에서의 정치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Arendt, 1967; Bohman, 2007; Pettit, 2010). 넷째, 정치적 자기결정권의 확립은 시민권의 또 다른 주요 영역인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확립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코즈모폴리턴 민주주의는 일국적이면서도 지구적인 시민권 즉 다층적 시민권을 동반하지 않을 수

7) 이하에서는 Bohman(2004)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8) 민족국가의 위임의 범위를 초과한 초국적 활동이 소속 시민들에게 아무런 책임성도 지지 않아 거꾸로 국가가 국제재정시장에 책임성을 갖는 현상은 “대리인의 뒤바뀐(reversal of agency)”이라 불린다(Bohman, 2001).

없다. 우선 수평적으로는 지구적 제도 안에서 개별 민족국가들 간의 영향력이 균등하도록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수직적 책임성을 갖도록 다층적 접근법(multiperspectival)을 확립해야 한다. 코즈모폴리탄 민주주의정체(政體)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반영해 속의민주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지구시민들이 정치참여를 통해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민족국가 민주주의에 비해 더 탈중앙화(decentralized)되고 다핵화(polycentric)된 제도들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uggie, 1999).

인위적인 사랑이자 시민적 덕성으로서의 고전적 공화주의의 조국에는 지구시민들 간의 인류애와 코즈모폴리탄 정치공동체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지구시민들은 자신들의 비지배 자유의 시민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의 토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타국에 대한 지배는 제국주의적으로 확대된 공화국의 시민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비지배를 향유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지배자들이 지구적인 지배에 나서려는데 대해 제국주의를 행하는 공화국에 소속된 시민들은 지구차원뿐 아니라 일국 내에서도 이를 통제하고 그 책임성을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Bohman, 2007). 권력을 분산하고 공통의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초국가적 제도가 부재하는 경우 이들 국가들은 국외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잠재적 지배자로 남아 있고, 그 지배자들은 언제든지 타락해 자국 시민들에게도 자의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곽준혁 외 역, 2009: 269-302)⁹⁾.

3. 지구시민권구상에 대한 윤리학적 평가

1) 의무론적 평가

의무론은 올바름이 선에 우선한다고 보아 비결과론적이고 타인의 이익이나 공평의 관점을 전제하지도 않는다. 의무론은 결과가 아닌 인간존중을 절대적 가치로 본다는 점에서 도덕적 행위의 보편 적용성을 검증할 수 있다(Carter, 2001). 게다가 의무론적 강제들은 대개 인간행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부정적 혹은 금지로 정식화되고, 행위에 대한 좁은 경계와 방향성을 규정한다. 이렇듯 의무론은 결과론처럼 광범위한 재량의 범위를 허용할 여지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엄밀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Davis, 1993)¹⁰⁾.

9) 계몽시대 공화주의자들이 유럽의 식민제국들에 반대했던 것은, 그것이 심각한 부정의였을 뿐만 아니라 공통의 자유를 파괴하는 역사적 성향을 지녔기 때문이다(Bohman, 2007). Kant는 제국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일국 차원에서 시민적 자유와 평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입법권과 행정권이 분리된 시민적 정치체제로서 공화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제국주의적 지배와 자의적인 폭력행사를 규제하기 위해 지구적인 차원의 공화국들의 연맹이 의무로서 요구된다고 주장했다(Pettit, 2010). 만약 시민들이 전쟁이나 식민주의팽창이라는 거대한 병폐를 막기 위한 수단을 가지려면, 비지배 자유를 보호하고 국가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제한할 수 있는 국제체제의 제도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10) 결과주의로 인한 인간의 자율성상실을 우려한 Kant는 인간행위에 대해 일체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완전한 도덕적 의무를 상정했다. 그는 정언명법을 통해 개인이 목적 자체로서의 인간을 행위의 동기로 삼는 보편화의 가능성을 통과하는 자율의 정식을 의무로서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첫째, 호혜적 의무(reciprocal obligation)를 들 수 있다. 개인 간의 관계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평등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나의 이익과 권리를 상대방의 그것과 공평하게 교환하려는 관대성(hospitality)의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Carter, 2001). 서구열강들은 중상주의·계몽주의시대부터 식민지경영에 열을 올렸고 제국주의는 전 세계 식민지들의 주권을 유린하고 자주적인 발전을 불가능하게 했다. Kant는 관대성의 호혜적 의무를 생명과 약속의 준수와 함께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보편적인 도덕적 의무로 채택했고 국경을 경계로 도덕적 의무를 상대적으로 적용하는데 대해 반대했다. 그는 식민지와 원주민의 권리를 주장해 정치적 정복과 경제적 착취에 반대하고, 자유무역은 호혜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보아 세계적인 불평등 확대에도 부정적이었다.

과거의 식민지가 대부분 독립한 20세기 중반 이후에도 서구열강들은 개도국들에 대해 군사적 개입, 정치적 인종적 분할, 경제적 압력, 자원의 약탈 등 신식민주의를 지배적으로 행사해 왔다(Pettit, 2010). 그런 점에서 현재 개도국들이 겪는 문제의 직간접적인 책임은 제국주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의 세계화가 확산되는 최근에는, 초국적기구를 매개로 한 강대국과 다국적기업의 세계지배가 개도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범함은 물론 정치적 자율성마저도 훼손하고 있다(심상용, 2011)¹¹⁾.

Rawls는 지구차원에서 만민 간에 자국의 자율성을 지키려는 공통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평등의 원칙으로 채택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그러나 그는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는 물론 경제의 세계화 이후 엄존하는 국제관계의 불평등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는 현존하는 국제관계의 불평등을 교정할 호혜성의 원리를 지구적 정의관 속에 포괄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그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관은 현존하는 강대국과 초국적 자본 주도의 세계적인 지배체제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발상으로 전락되고 만다. 게다가 그의 만민법이 출간된 1999년은 IMF가 한국에 대해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구조조정프로그램을 강요해 주권을 침해한 데 대해 지구촌시민들의 비판이 들끓었을 때이기도 했다.

반면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는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돼 있어 지구촌사회는 이미 정치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상황인식에서 출발한다(심상용, 2012). 이에 기초해 현존하는 국제관계의 불평등을 교정할 호혜성의 원리를 경제의 세계화시대의 지구적 정의관 속에 포괄하려 시도한다. 현재는 이미 근대 국민국가를 낳은 웨스트팔리아체제와는 전혀 다른 역사적 국면에 놓여 있다.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외부가 발생해 강대국에 의한 개도국의 주권침해가 구조화 돼 있는데, 이로 인해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입각한 전통적인 일국적 해결이 불가능한 조건에 처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외부를 내부화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뛰어넘는 지구적인 정치공동체의 실체화가 불가피하고 지구적 정체(政體)가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둘째, 시민적 권리에 대한 의무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 권리는 인간만이 소유하고 있고 특정한 지

(Arrington, 1998).

11) 국제제정기구들의 권력구조와 운영의 실태에 대해서는 김준현(2008), 최근 국제제정기구를 포함한 다자간 기구(multilateral body) 개혁의 주장들은 Newland(2002: 219-220), Williams(2002: 47), Imber(2002: 120-121), 국제제정기구들의 권력구조와 운영의 실태에 대해서는 김준현(2008), 최근 국제제정기구를 포함한 다자간 기구(multilateral body) 개혁의 주장들은 Newland(2002: 219-220), Williams(2002: 47), Imber(2002: 120-121) 등을 각각 참조할 수 있다.

위나 관계와 무관하게 모든 개인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권리는 자유에 기초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자보다 희생자와 억압받는 자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아가 모든 국가와 문화권을 막론하고, 어느 곳에서도 어떤 정치형태 아래서든 폭넓게 이해되는 최소한으로 중요한 도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위자들을 구속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Almond, 1993)¹²⁾.

추상적인 천부인권관과는 달리 Marshall(1963: 40-46)은 근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과 소속에 기초한 포괄적 시민권(full citizenship)관을 제시했다. 시민권의 세 차원은 자유권, 정치적 시민권, 사회적 시민권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각각 개인적 자유에 관한 권리, 정치적 참여에 관한 권리, 적정 수준의 복지 및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뜻한다. 자유권과 정치적 시민권이 근대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로서 확보되는 것이라면, 사회적 시민권은 문명화된 삶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실체적 성격을 갖고 있어 복지국가를 통해 비로소 구현되고 있다고 본다(Dean, 1996: 40).

그러나 국제무대에서는 이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돼 왔다. 일국차원에서는 소속 시민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했던 선진강대국들은, 식민주의나 신식민주의를 통해 식민피해국 시민들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억압하는 이중성을 보여 왔다. 최근에는 국제재정기구들의 작동으로 개도국들이 경제의 세계화에 깊숙이 편입된 결과, 개도국정부들은 시민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보다는 세계적인 자본의 순환에 봉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조정기능을 상실한 채 시장국가를 피할 수 없었고, 시민들은 정치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사회적 권리들이 축소되는 등 시민권 전반의 심각한 후퇴를 동반했다(심상용, 2011; McMichael, 2005: 599).

Rawls는 국내차원에서는 공정한 기회와 평등, 소득과 부의 분배, 사회보장 등 Marshall이 제시한 포괄적 시민권에 관한 세부구상들을 밝히며 이를 시민들의 자유와 시민적 권리의 핵심적 목록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체화 된 합리적 개인 간의 계약의 원리에 기초해 일국적 정의관을 편 것과는 달리, 지구적 차원에서는 집합적 개념인 만민관을 등장시켜 일국적 시민권관을 지구적으로 확장하는데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포괄적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가 있다면 그 원인은 국내적인 요인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과거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의 유산 뿐 아니라 최근 경제의 세계화의 영향으로 외부자에 의해 개도국 시민들의 포괄적 시민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데 따른 근원적인 한계이다. 또 지구시민들 간에는 시민적 덕목이 공유돼 있지 않아 귀속적 공동성이 없기 때문에 일국적 분배관을 확장할 수 없다는 논리도 펴고 있는데, 일국적 차원에서는 무연고적(無緣故的) 자아관을 주창하면서 지구적 시민권에 대해서는 연고적 자아관에 입각해 반대 논리를 펴는 비일관성으로 인해 공동체주의자들로부터 비판받아왔다(Sandel, 1996).

반면 코즈모폴리탄 공화주의는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서구강대국에 의해 개도국시민들의 비지배

12) 자유방임주의자인 Nozick의 논법에 따르면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들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가해는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의무적 행위에서 이탈한 것이다(Dower, 1993). Rawls 스스로도 시민복복종을 정당화하면서, 민주사회에서 다수자가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이는 사회계약의 관점에 어긋나 정의의 제1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논변한 바 있다(Rawls, 1969).

자유로서의 시민권이 침해되는 민주주의의 이상(異狀)현상에 대해 뚜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심상용, 2012). 경제의 세계화가 일국적 민주주의와 시민권의 기본원리를 훼손시키고 있어, 일국 시민권과 별개로 지구시민들의 정치적 자기결정권으로서의 시민권을 수호하고 사회적 시민권 보장을 위해 지구시민들의 비지배 자유를 구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개도국시민들의 포괄적인 시민권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구촌차원에서 공화주의정체(政體)를 확립해 반지배원칙을 법률로 구현해야 하는데, 이는 개도국시민들의 정치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시민적 정치적 권리확립을 용이하게 할 것이고, 나아가 개도국시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들을 보장해 사회적 시민권을 확립하는 의무를 지구적 심의의 구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고 본다. 게다가 지배당하는 국가의 시민뿐 아니라 지배하는 국가의 시민들에게도 자신들의 비지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구적 지배에 대해 일국적 지구적 정치에 참여할 시민적 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도국시민뿐 아니라 강대국시민에게도 지구적 시민권은 비지배 자유의 시민권확립을 위한 의무적인 요구라고 보는 것이다.

2) 목적론적 평가

목적론은 선을 극대화시키는 행위를 올바름으로 정의해 가치 있는 인간행위에 대한 결과주의의 입장을 채택한다(Pettit, 1993). 다양한 가치를 지닌 선택의 대안들을 고려하고, 실제 가능성은 선택의 결과 예상되는 바에 입각해 판단하는 결과주의적 평가방법을 선호한다. 특히 비도덕적 가치인 결과의 효용성을 기준으로 인간행위의 타당성을 판단하므로 근대 합리성이 요구하는 표준적인 견해와 일치할 수 있다. 공리주의가 의무론과 함께 현대윤리학에서 가장 유력한 윤리설이 돼 있는 이유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중시해 근대 자유방임주의가 전제하는 추상적 인간관의 신조를 부정하고, 모든 권리는 실정법에서 도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 있다(이대희, 2003)¹³.

공리주의에 입각한 판단은 어떤 접근이 더 큰 효용을 가져다주느냐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공리주의를 둘러싼 최대의 쟁점은 쾌락 간의 비교가능성문제라 할 수 있다(Goodin, 1993). Mill은 인간에게 자유, 능력과 감정, 안전감, 인격 등을 제공해 주는 쾌락의 요소들이 질적으로 더 우월하기 때문에, 사회제도와 교육수준을 개선해 공평성에 기초한 사회진보를 이루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Arrington, 1998). 이에 대해 현대의 공리주의는 선호만족과 파레토최적의 개념으로 양적 공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생활에 필수적인 복지와 관련된 이익은 매우 표준화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들의 목록이 다른 사람들과 유사할 수 있고, 이를 충족시키는데 우선순위를 두어 해악적인 선택을 억제할 수 있다¹⁴). 이 중 정

13) Bentham의 쾌락계산법은 제7항으로 범위(content)를 제한해 윤리적 이타주의의 단초를 만들었고, Mill은 다른 사람의 욕구를 포함해 전체의 선에 기여하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라고 보아 공평성에 기초한 도덕성의 요소를 명확히 했다(Arrington, 1998). 최대다수에 주목하는 행동총합(locus-aggregative) 공리주의나 최대행복을 중시하는 몰량총합(good-aggregate) 공리주의는 범위 내의 개인들 간의 비개인성(impersonality)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Goodin, 1993).

14) 그러나 한계효용이 체감하면 사람들 간의 공리의 분배에서는 자율성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 때

의의 관념을 질적으로 우월한 재화 혹은 필수재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적 시민적 권리관은 효용성개념에 기초해 있다¹⁵⁾. 권리는 독립적으로 인정됨으로써 전체의 효용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민적 권리 그 자체가 비도덕적 가치인 선의 일부라는 강력한 주장이다(Almond, 1993). 이를테면 자유와 시민권을 공리주의적 효용의 관점에서 보았던 Bentham과 Mill은 근대시대에 자행됐던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Carter, 2001).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강대국에 의해 침범되는 개도국 시민들의 자유권, 정치적 시민권, 사회적 시민권은 Mill이 주장하는 질적으로 우월한 재화이고, 현대 공리주의에 의하면 기본적인 재화들에 해당 된다¹⁶⁾.

실제로 경제의 세계화로 인한 영향은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¹⁷⁾. 비판론자들은 경제의 세계화가 개도국들을 정치적 기술적 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국제적 위계질서의 생산연쇄에 편입시키려 한다고 비판한다. 이로 인해 국민경제의 제 경제부문들, 내생적 자본축적양식, 부의 재분배체계 등을 파편화시킨 결과, 기존의 경제적 사회적 관계는 세계경제와 연관된 금융 및 무역이익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국가는 민영화, 통화정책의 탈규제, 사회정책의 후퇴 등의 정책을 펴도록 그 역할이 수정된다고 주장한다(심상용, 2011; Canak, 1989).

나아가 강대국과 그 자본이 주도하는 경제의 세계화는 개도국들에게 '시장의 힘'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시장국가(market state)화'를 낳았고, 개도국정부의 자율적 정책영역을 제한해 내포적인 발전전략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Leys, 1996: 7). 그 극적인 예가 콜롬비아·과테말라·멕시코·파나마·페루·베네수엘라 등이 선택했던 수입대체산업화(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ISP)의 실패이다(심상용, 2011)¹⁸⁾.

문에 과격한 방식의 근본적인 재분배가 반드시 더 나은 공리를 가져다주지는 않는다고 본다.

- 15) Mill은 권리를 구성하는 유용성의 요소들로 도덕적 권리의 보호, 자격의 보장, 의무와 권리의 계약 이행에 대한 신뢰의 준수, 노약자·장애인·환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공평한 처우, 기회의 평등의 보장 등을 제시한다. 이를 한마디로 완전한 의무로서의 시민적 권리라고 표현하는데, 이 때 완전한 의무란 개인들이 지니는 서로 연관된 권리와 관련된 의무라고 정식화한다(Arrington, 1998). 한편 자유권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막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자유방임주의와는 달리 사회의 행복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관점을 취해, 사상과 토론의 자유를 통한 속의가 국가가 일으키는 전쟁 등 비합리적이고 억압적인 선택을 막는 유력한 방안임을 제시하고, 개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과 사회와 구성원들을 위협이나 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과 희생을 개인들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개입역할을 폭넓게 인정한다.
- 16) Bentham은 식민주의와 불평등 확대에 부정적이었고, 자유무역은 호혜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보아 현재의 국제평화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Carter, 2001). 특히 인권관에 기초해 노예제를 거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Mill도 식민주의에 반대하고 그 대신 자유무역이 평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약탈적 무역의 실상에 곧 실망하고, 공격적이고 자기 확대 지향적인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의 힘이 작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17) 이 논문에서는 지면의 제약 때문에 세세하게 예를 들 수는 없지만, 경제의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과 그로 인한 개도국의 자율성 침해와 사회적 시민권의 훼손에 대해서는 여러 문헌을 참조할 수 있다. 국내 문헌으로는 김종섭(2003), 조돈문(2003), 김종섭(2004), 이남섭(2004a), 이남섭(2004b), 이내영(2005), 마인섭(2007), 김성현(2008), 심상용(2011), 외국 문헌을 번역한 글로는 이대훈 역(1998), 이덕열 역(2003), 정성진·정진상 역(2003), 강정민 역(2006), 고빛샘·구세희 역(2011), 제현주 역(2011)이 있다. 한편 이들 주장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는 조희연·진영중(2001), 조효제·진영중 역(2004), 조희연(2008), 심상용(2013)을 참조할 수 있다.

의무론자로서 Rawls는 합리적인 개인 간의 계약관에 의거해 일국적 정의관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러나 지구적인 차원에서 정의관을 전개하면서는 이전의 입장에서 동요해 공리주의적 접근과 유사한 논법을 구사하고 있다. 우선 그는 일국적 범위에서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제2원칙을 공리주의적 고려에 의해 채택하리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국사회와 만민사회를 구분하면서는 전혀 다른 논리를 전개한다. 즉 일국적 분배권이 이미 정해져 있는 가운데 이를 대표하는 만민 간의 정의관을 구축하려 해, 사실상 계약의 원리에서 이탈해 원초적 위치가 아닌 현실세계의 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현실주의적 유토피아를 추구하려 하는 것이다. 그는 나름대로의 공리주의적 공식에 입각해, 자신의 정부가 있는 만민이라면 어떠한 만민도 다른 만민을 위한 이득이 자신에게 부과되는 손해보다 중요하다는 전제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Rawls는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의 폐해뿐 아니라 최근 경제의 세계화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해 무지한 상태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입각한 자율의 원리를 뛰어넘어 지구적인 차원에서 각 국가구성원들 간의 인위적인 재분배를 추구하는 것은, 이미 분배의 원리를 확정한 개별 국가 만민의 이익과 상충된다는 일종의 공리주의적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는 지구 시민들 간의 재분배를 반대하면서, 만민들 간의 자율성은 어떠한 효용의 원칙도 배제하기 때문에 지구적 정의관에서 공리주의를 적용하기를 거부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그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입각한 자율주의가 공리에 부합하고 이를 부정하는 지구적인 차원의 재분배는 개별국가와 만민들의 효용을 감소시킨다는 논법을 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는 서구강대국에 의해 개도국시민들의 비지배 자유로서의 시민권이 침해되는 구조와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심상용, 2012). 이를 개도국시민들의 정치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시민적 정치적 권리확립을 용이하게 하고, 개도국시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들을 보장해 사회적 시민권을 확립하려는 목표로 연결시키고 있다. 또 지구촌차원의 정치공동체에서 비지배 자유의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포괄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면 궁극적으로는 강대국 시민들의 비지배 자유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외부에 대한 지배를 추구함으로써 인해 강대국 내부 시민들의 비지배 자유가 침해된다면 이 또한 큰 해악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의 접근은 과거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 뿐 아니라 경제의 세계화로 인한 이득을 강대국들이 편취하고 다수 개도국 시민들을 구조적인 희생양으로 전락시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구적인 차원에서 비지배자유를 구현해 개도국시민들의 시민권이 확립된다면 현재의 지구적인 차원의 해악을 줄이고 효용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 18) Romer의 신경제이론의 추종자들은 이들 국가들이 실패한 이유를 경제의 세계화의 혁신확산효과를 부정해 저성장을 면치 못한 데에서 찾는다(Dollar, 2004). 그러나 수입대체산업화의 결과에 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평가는 현실에서는 부정된다(Huber and Stephens, 2005: 620-628). 수입대체산업화를 채택했던 국가들이 겪은 곤경의 원인은 외채문제였고, 그 결과 1980년대의 경제위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구조조정프로그램을 강요당하고 급속히 시장국가화 되는 등 세계경제에 깊숙이 편입되는 변형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심상용, 2011).

4. 결론

지구시민권구상에 대한 대표적인 접근들인 Rawls의 자유주의적 시민권구상과 코즈모폴리탄 공화주의의 지구시민권구상은 매우 상이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시민권구상 간에는 이론적 합의는 물론이거니와 공통적인 인식의 토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 접근들의 보편타당한 적용가능성을 검증하는 윤리학적 토대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Raechels and Raechels, 2010). 경제의 세계화시대에 지구시민 혹은 만민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지구시민권논의는 그 보편타당한 적용가능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결코 이성적인 합의의 준거가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지구시민권구상에 대한 윤리학적 검토 결과, Rawls의 자유주의적 관점은 보편타당성을 갖기 어렵고 코즈모폴리탄 공화주의의 관점은 보편주의적인 윤리학적 정당화가 가능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의무론차원에서 볼 때, Rawls의 견해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호혜성의 의무의 최종 귀착지로 보아 현존하는 국제관계의 불평등을 교정할 원리를 반영하지 않았고, 국내차원과는 달리 연고적(緣故的) 자아를 공유하지 못하는 지구시민 간에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시민적 권리에 관한 의무 면에서도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공리주의차원에서도, Rawls의 견해는 공리주의의 적용을 거부한다는 언명과는 달리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개별국가들 간의 재분배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각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상반되는 논리로 공리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호혜성의 의무에 대해, 코즈모폴리탄 공화주의는 현존하는 국제관계의 불평등을 교정할 원리를 세계화시대의 지구적 정의관 속에 포괄하려 하고 있다. 시민적 권리의 의무에 대해서도,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개도국 시민들의 시민권이 침해되는 이상(異狀)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비지배 자유권을 지구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일국적 지구적 차원에서 반지배 원칙을 구현하는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구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로 인한 개도국 시민들의 포괄적 시민권 침해현상과 외부에 대한 지배에 나서는 강대국 내부에 비지배가 확대되는 경향을 극복할 것을 주장해, 개도국 시민들을 구조적인 희생양으로 삼는 경제의 세계화의 해악적 결과를 교정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지구시민권관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롤지언(Rawlsian)들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머물고 있는 Rawls의 구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특히 경제의 세계화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인식의 지평확대는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대한 불복종을 정당화했던 Rawls 구상의 잠재력을 지구시민권영역에서도 확장하는 계기가 되어 할 것이다. 둘째, Rawls 구상의 일국적 제한이나 일국적 관점과 지구적 적용 간의 이중성에 대한 비판과 공리주의적 고려의 부재 등 만민법을 향한 정치윤리학적 비판(Beits, 1985; Barry, 1995; Sandel, 1996; Pogge, 2001 등)에 대해 롤지언들은 일관성 있는 견해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자유주의적 지구시민권구상은 윤리적 정당화의 논거를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Dower(2003: 19-21)는 어떤 문제가 지구적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의 모든 지역들에서 사람, 사건, 과정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일 것, 모든 세계인들의 공동(co-ordinated)의 노력을 필요로 할 것, 세계적으로 상당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일 것 등 세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관점에 의하면, 경제의 세계화 시대인 현재 새 밀레니엄을 경과하며 일국적 민주주의와 배타적 시민권의 훼손은 지구적인 사회문제로 표면화 되고 있다. 이에 사회과학계에서는 지구적인 차원의 정의론으로서 지구시민권구상에 대한 활발한 입론화와 논의를 전개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지구시민들의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관심이 내재돼 있다. 그러나 그간 사회복지계의 학문적 관심은 국가복지체제와 일국적 시민권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왔고, 지구적 정의와 지구시민권에 대한 관심은 매우 희박했던 게 사실이다.

유력한 지구시민권구상인 Rawls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와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의 논쟁은 기존의 국가중심성에서 탈피하는 지구적 정의와 지구시민권에 대한 논의의 신평탄이라고 볼 수 있다. 수천 년 간 유토피아로 꿈꿔왔던 일국적 시민권이 일국적 정치체제를 매개로 불과 3백여 년 전에서야 확립됐듯이, 지구적 정의와 지구시민권을 확립하고 지구시민들의 보편적인 사회적 권리를 제도화하기 위한 이론적 모색은 도전 가능한 과업이기 때문이다. 지구적인 차원의 시민권논의가 확장되는 지금, 사회복지계는 자선과 낙인적인 복지급여에서 탈피해 일국적 정치체제를 매개로 사회적 시민권을 제도로 확립했던 일국적 경험 교훈으로 지구적인 사회정의와 지구시민권에 대한 이론적 모색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 앞으로 사회복지계가 학문적 관심을 가져야 할 의제영역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일국적인 정치적 제약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일국적 지구적 차원 즉 중층적인 차원에서 포괄적인 지구적 시민권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는 현존하는 국제관계의 불평등을 교정할 원리를 세계화시대의 지구적 정의관 속에 포괄하려는 호혜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비지배자유관을 지구적으로 확장해 반지배 원칙을 구현하는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구현함으로써 시민적 권리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주창하고 있다. 결국 비지배 자유의 원리를 반영하는 사회적 시민권 등 포괄적인 시민권의 지구적인 구상과 일국적 지구적 정체(政體)를 매개로 한 제도적 질서의 상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작업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존 복지국가를 매개로 구축된 기존 시민권이론과는 달리 근대화의 혜택에서 배제된 지구시민들의 시민권의 세부적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의 모태인 고전적 공화주의는 모든 시민들이 예속이나 주종적 관계로부터 실질적으로 탈피해 존엄과 자존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들의 보장을 사회적 시민권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한다. 또 사회적 시민권의 세부 내용으로 일할 권리, 교육의 기회, 빈곤으로부터의 탈피, 기타 노령·질병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 등을 제시한다⁹⁾(심상용, 2012). 그러나 이와는 달리 아직까지 지구시민권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는 그 이론적 기초가 취약한 수준이다. 특히 사회적 시민권의 경우 독자적인 이론적

영역을 구축하지 못하고 개별 논자들의 제안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²⁰⁾. 지구시민권의 구성과 세부내용에 대한 일정한 지향점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향후 지구시민권에 대한 확장된 논의에서 이론적 기초가 취약한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사회복지계가 적극 개입해 지구적 시민권의 목록 특히 사회적 시민권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론적 정초(定礎)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정민 역, 2006, 『세계화의 두 얼굴: 세계화 시대의 양극화를 넘어서는 길』, Isaak, Robert A., 2004, The Globalization Gap: How The Rich Get Richer and The Poor Get Left Further Behind, 서울: 이큰아침.
- 고빛샘·구세희 역, 2011, 『자본주의 새판짜기: 세계화 역설과 민주적 대안』, Rodric. D., 2011, The Globalization Paradox Democracy and The Future of The World Economy, 파주: 21세기북스.
- 곽준혁, 2009, “공화주의와 인권”, 『정치사상연구』, 15(1): 31-53.
- 곽준혁·조계원·홍승현 역, 2009,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Laborde, C. and Maynor, J., 2008, Republicanism and Political Theory, 서울: 까치.
- 김경희·김동규 역, 2006., 『공화주의』, Viroli, M., 1999, Republicanesimo, 고양: 인간사랑.
- 김성현, 2008, “국제금융기구와 빈곤축소프로그램”, 『경제와사회』, 80: 275-314.
- 김종섭, 2003,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 개방화와 소득분배”, 『라틴아메리카연구』, 16(2): 5-25.
- _____, 2004,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 개방화와 소득분배: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사례”, 『라틴아메리카연구』, 17(4): 299-322.
- 김준석, 2010, “국제원조의 윤리학에 대한 소고: 토마스 포제와 존 롤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0(1): 7-36.
- 김준현, 2008, 『경제적 세계화와 빈곤문제, 그리고 국가』, 파주: 집문당.
- 김지현·손철성, 2009, “세계시민주의,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시대와철학』, 20(4): 93-124.
- 마인섭, 2007, “남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복지개혁의 정치: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1): 135-162.
- 박순우, 2004, “T. H. Marshall의 시민권론의 재해석”, 『사회복지정책』, 20: 87-107.

19) 나아가 대거(Dagger, 2006)는 고전적 공화주의의 시민경제론으로 자유방임자본주의와 소유 대신 분배에만 관여하는 복지국가와 차별화되는 제한된 시장경제(constrained market economy)와 롤스(Ralws, 2001)의 자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를 제시한다. 최소한의 사회적 시민권의 세부 목록으로는 소수의 경제독점 억제에 대해 인적자본과 생산적인 자산에 대한 광범위한 소유권 보장, 사회적 경제적 평등달성, 근로자의 의사결정참여 등 일터에서의 공화주의 보장, 공동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기업과 경제운영, 상속세와 누진소비세 실시, 조건부 기본소득과 기초적 자본제공 등을 제시한다(심상용, 2012).

20) 이를테면 현재 지구적인 실천현장에서는 개도국 시민들의 자국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정치적 자기결정권을 회복하고 사회적 시민권을 확립하기 위한 의제별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해외원조, 개발NGO의 활동,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시장개방 같은 비제도적인 접근부터, 토빈세 도입 등 자원재분배, 국제체제에서의 개도국의 사회적 시민권 보호, 다중적 시민권 보장 등의 제도적인 접근까지 다양한 주의주장들이 망라돼 있다(심상용, 2013).

- 손철성, 2008, “해외 원조의 의무에 대한 윤리적 고찰”, 『윤리교육연구』, 17: 61-76.
- 심상용, 2011, “지구시민권개념의 구성가능성”, 『동향과전망』, 83: 113-143.
- _____, 2012,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의 지구시민권구상에 대한 연구”, 『경제와사회』, 93, 137-163.
- _____, 2013,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 지구시민권구상의 실천전략에 대한 연구”, 『국가전략』, 19(3): 137-162.
- 이남섭, 2004a, “신자유주의 사회정책의 변화와 NGOs의 대응: 멕시코의 사례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17(1): 49-93.
- _____, 2004b, “신자유주의 시대 칠레 사회정책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대응”, 『라틴아메리카연구』, 17(4): 49-79.
- 이내영, 2005, “FTAA반대 시민운동: 목표, 활동, 성과”, 『라틴아메리카연구』, 18(1): 39-68.
- 이대훈 역, 1998, 『빈곤의 세계화: IMF 경제신탁통치의 실상』, Chossudovsky, M., 1996, *The Globalization of Poverty : Impacts of IMF and World Bank Reforms*, 서울: 책갈피.
- 이대회, 2003, 『기초윤리학』, 대구: 정림사.
- 이덕열 역, 2003,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Brecher, J, Tim, C. and Smith, B., 2000, *Globalization from Below: The Power of Solidarity*, 고양: 아이필드.
- 정성진·정진상 역, 2003, 『반자본주의 선언』, Callinicos, A., 2003, *An Anti-Capitalist Manifesto*, 서울: 책갈피.
- 제현주 역, 2011,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 Rodric, D., 2009, *One Economics, Many Recipes: Globalization, Institutions, and Economic Growth*, 서울: 북돋움.
- 조돈문, 2003, “브라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 삶의 조건: 워싱턴 컨센서스의 파산과 “정당성 전이” 효과”, 『라틴아메리카연구』, 16(2): 93-124.
- 조효제·진영중 역, 2004, 『지구시민사회: 개념과 현실』, Anheier, H., Glasius, M. and Kaldor, H., 2001, *Global Civil Society Yearbook 2001*, 서울: 아르케.
- 조희연, 2008, “민주주의의 지구적 차원: ‘지구적인 민주주의 정체(政體)’의 형성과 그 사회화”, 『경제와 사회』, 79: 10-37.
- 조희연·진영중, 2001, “반세계화 행동주의의 논리”, 『동향과전망』, 49: 200-222.
- Almond, B., 1993, “Rights”, 259-272, in *A Companion to Ethics*, edited by Singer, P. Oxford: Blackwell.
- Arendt, H., 1967,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arcourt Brace.
- Arrington, Robert, L., 1998, *Western Ethics: An Historical Introduction*, Massachusetts: Blackwell.
- Barry, B., 1995, *Justice As Impartiality: A Treatise on Social Justice, Volum II*, Oxford: Clarendon.
- Beitz, Charles, R., 1979, *Politic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85, “Justi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282-310, in *International Ethics: A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Readers*, edited by Beitz, Charls R., Cohen, M., Scanlon, T. and Simmons, John 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Rawls’s law of peoples”, *Ethics*, 10(4): 660-696.
- Bohman, J., 2001, “Cosmopolitan republicanism”, *Monist*, 84(1): 3-22.
- _____, 2004, “Republican cosmopolitanism”, *Th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12(3): 336-352.

- _____. 2007, *Democracy Across Borders: From Demos to Demoi*, Cambridge: MIT Press.
- Canak, William L., 1989, "Debt, austerity and Latin America in the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153-169, in *Lost Promises: Debt, Austerity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edited by William, L. Boulder: Westview.
- Carter, A., 2001, *The Political Theory of Global Citizenship*, London: Routledge.
- Chung, R., 2003, "The cosmopolitan scope of republican citizenship", *Critical Review of International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6(1): 135-154.
- Dagger, R., 2006, "Neo-republicanism and the civic economy", *Politics, Philosophy and Economics*, 5(2): 151-173.
- Davis, Nancy A., 1993, "Contemporary deontology", 205-218, in *A Companion to Ethics*, edited by Singer, P. Oxford: Blackwell.
- Dean, H., 1996, *Welfare, Law and Citizenship*, London: Harvester Wheatsheaf.
- Dollar, D., 2004, "Globalization, poverty, and inequality since 1980",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333.
- Dower, N., 1993, "World poverty", 273-283, in *A Companion to Ethics*, edited by Singer, P. Oxford: Blackwell.
- _____. 2002, "Global ethics and global citizenship", 146-157, in *Global Citizenship: A Critical Reader*, edited by Dower, N. and Williams, J.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_____. 2003, *An Introduction to Global Citizenship*,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Dower, N., and Williams, J., 2002, "Introduction", 1-8, in *Global Citizenship: A Critical Reader*, edited by Dower, N. and Williams, J.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Goodin, Robert E., 1993, "Utility and the good", 241-248, in *A Companion to Ethics*, edited by Singer, P. Oxford: Blackwell.
- Huber, E., and Stephens, John D., 2005, "Welfare states and the economy", 552-574, in *The Handbook of Economic Sociology, 2nd Ed*, edited by Smelser Neil J. and Swedberg, R. New Y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mber, M., 2002, "The UN and global citizenship", 114-124, in *Global Citizenship: A Critical Reader*, edited by Dower, N. and Williams, J.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Leys, C., 1996, *The Rise and Fall of Development Theo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Marshall, T. H., 1963,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Grew, A., 2002, "Transnational democracy: theories and prospects", 269-294, in *Democratic Theory Today: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edited by Carter, A. and Stokes, J. Cambridge: Polity Press.
- McMichael, P., 2005, "Globalization", 587-606, in *The Handbook of Political Sociology*, edited by Janoski, T., Alford, R., Hicks, A. and Schwartz, Mildred 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wland, D., 2002, "Economic globalization and global citizenship", 212-221, in *Global Citizenship: A Critical Reader*, edited by Dower, N. and Williams, J.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Nussbaum, Mattha C., 2002, "Patriotism and cosmopolitanism", 4-9, in *For Love of Country?: A New Democracy Forum on the Limits of Patriotism*, edited by Nussbaum Martha, C., and

- Cohen, J. Boston: Beacon Press.
- Pettit, P., 1993, "Consequentialism", 230-240, *A Companion to Ethics*, edited by Singer, P., Oxford: Blackwell.
- _____, 1998, *Republicanism: A Theory of Freedom and Government,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0, "A republican law of peopl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Theory*, 9(1): 70-94.
- Pogge, T., 2001, "Priorities of global justice", *Metaphilosophy*, 32(1/2): 6-24.
- Raechels, J., and Raechels, C., 2010, *The Elements of Moral Philosophy, 6th Ed*, New York: McGraw-Hill Higher Education.
- Ruggie, John, G., 1999, *Constructing the World Polity*, London: Routledge.
- Sandel, M., 1996, *Democracy's Discont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inger, P., 2002, *One World: The Ethics of Globalization, 2nd 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Rawls, J., 1969, "The justification of civil disobedience", 240-255, in *Civil Disobedience: Theory and Practice*, edited by Badau, H. A. New York: Pegasus.
- _____,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_____, 1999, *The Law of Peopl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1,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van den Anker, 2002, "Global justice, global institutions and global citizenship", 158-168, in *Global Citizenship: a Critical Reader*, edited by Dower, N. and Williams, J.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Walzer, M., 1983, *Spheres of Justice: A Defense of Pluralism and Equality*, New York: Basic Books.
- Williams, J., 2002, "Good international citizenship", 41-52, in *Global Citizenship: A Critical Reader*, edited by Dower, N. and Williams, J.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A Study on the Ethical Basis of Global Citizenship Idea as a Theory on Global Justice

- Focusing on Rawls' Liberal Internationalism and
Cosmopolitan Republicanism

Sim, Sangyong
(Sa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thical basis of two influential global citizenship idea - Rawls' liberal approach and cosmopolitan republicanism - as a theory on global justice. In the aspect of deontology, Rawls' view has the limit not to reflect reciprocal obligation and duty on civil right in the era of economic globalization that inequality has been structured. But cosmopolitan republicanism has the basis of deontological justification because advocates the realization of anti-domination principle at global level. In the aspect of utilitarianism, Rawls attempts to justify the logic rejecting redistribution intra nations. But cosmopolitan republicanism has the potential to decrease maleficence at global level and to increase utility level through overcoming the structured sacrifice of the citizens of developing countries.

Key words: global justice, global citizenship, liberal internationalism, cosmopolitan republicanism, normative ethics, applied ethics

[논문 접수일 : 13. 10. 01, 심사일 : 13. 10. 18, 게재 확정일 : 13. 11. 11]